

의안번호	2219758
의 퇴 인	안철수 의원
회 답 일	2026. 3. 9.
추 계 번호	26F107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창업기업 용자 관련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창업기업 용자 관련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인지세는 2027년 876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총 1,808억원(연평균 90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8년, 인지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누적	연평균
창업기업 용자 관련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16조)	-876	-932	-1,808	-90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6조 (인지세의 면제)	○ 창업기업 용자 관련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16조 (인지세의 면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6년중 통과되어 2027년 작성분 문서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- 창업기업 용자 관련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의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해당 인지세 면제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면제실적

-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, 창업기업의 용자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규정
 - (대상기업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의 창업중소기업
 - (대상기간) 창업일부터 2년 이내
 - (대상문서)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, 통장, 계약서 등의 문서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8년 12월 31일
- 창업기업의 용자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실적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확인되므로,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면제실적의 연평균 증가율: 6.41%

[표 2] 창업기업의 용자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인지세	573	607	723	712	727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; 중소기업벤처부 제출자료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창업기업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, 인지세는 2027년 876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총 1,808억원(연평균 90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8년, 인지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누적	연평균
창업기업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16조)	-876	-932	-1,808	-904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